

조효제교수님께서 보내오신 의견입니다.
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잘보르지만 참고가
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.

국제장애인 권리조약 15조 제안 비교
<한국정부 안>

1. 핵심내용

- 장애 여성 별도 조항 두자
- 장애 여성의 일부 문제 (예: 보성과 출산
을 중심에 놓고 사고)

2. 강조점

- 보성 강조
- 출산과 육아 강조

3. 전체적 인상

- 국제법 제정에 있어 '보편지향적' 제안과
'자기중심적'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, 한국
정부안은 후자에 가깝다. 모든 국가들의 관
점에서 자기 제안을 생각해 보면 좋을 듯
- 건설적/포괄적 wording 보다 특정한 상황
을 몇 개만 열거한 느낌

4. 특기 사항

- 자료수집과 통계 조항 언급

5. 문제점/미비점

- 왜 이 단독조항 필요한지 근거가 약함
- 왜 국내법에서 반드시 '별도의 언급'(separate reference)이 있어야 하는지
=> 잘못 들으면 법이 좋아도 별도의 언급
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 있음
- 장애여성의 '사회 내 통합'에 대한 넓은
관점이 결여된 느낌
- 장애여성의 고용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
등은?
- 장애여성의 출산/양육과 관련된 차별은 언
급하지만 미혼 장애여성의 차별은 언급 없

음

- 장애여성의 동등한 교육기회에 관한 언급
없음

<한국 NGO안>

1. 핵심내용

- 한국정부안과 전반부는 동일하고 2(f, g,
h)만 추가됨

2. 강조점

- 감수성 훈련 조항 삽입
- 장애여성의 빈곤, 경제상황 언급
- 시민사회 참여

3. 전체적 인상

- 한국정부안과 대동소이함
- 그 이유는 3개 절이 추가되었지만 한국정
부안의 기본틀 안에서 몇 개만 더 추가한다
는 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

4. 특기 사항

- 경제적 조건 언급은 중요

5. 문제점/미비점

- 한국정부안과 비슷
- '고립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에 편입된다'는
말이 무슨 뜻인지? 혹시 여기서 말하는 '시
민사회'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공동체
(community)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?
- 장애여성의 '네트워킹'을 정부가 왜 해 주
어야 하는지? 네트워킹과 시민사회 편입 간
의 차이는 무엇인지?

<키키 1안>

1. 핵심내용

- 장애여성의 특별한 곤란 언급
- 장애여성의 차별 금지와 자유 강조
- 각국 정부가 장애여성의 정책을 입안할 때
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짧게 제시

2. 강조점

-장애여성의 문제를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

3. 전체적 인상

-건설적, 포괄적,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긍정적인 느낌

-구체적이고 특정한 언급은 부족하나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음

4. 특기 사항

-국제법의 선언적 조항으로서 보범적으로 작성됨

5. 문제점/미비점

-교육과 자활, 자립에 대한 표현 미비

-구체성 미비

에 포함시키면 좋겠음

-문화적 상벽으로 인해 이 조항에 반대하는 개도국 입장을 고려해서 '안심시키는 문안'이 한 줄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?

-정부의 역할로 다음과 같은 점 삽입되면 좋겠음

∴자기 몸과 마음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(to ensure ownership in person in terms of body and mind)

∴인간으로서 최대한 꽃필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도록 도와주고 (to help develop capabilities for full human flourishing)

<키키 2안>

1. 핵심내용

-여성장애 특별조항의 필요성

-가맹국이 유념해야 할 사항

-가맹국 정부의 구체적 정책 나열

2. 강조점

3. 전체적 인상

-키키의 1안과 한국안을 합친 것

4. 특기 사항

5. 문제점/미비점

-가장 포괄적이긴 하나 이렇게 나열식으로 나가면 반드시 빠지는 항목이 생김

<개인적 단상>

-키키의 1안과 2안을 합치면서 한국 엔지오가 내놓은 시민사회를 '공동체에의 통합'(integration into their community)이라는 식으로 표현 바꾸어서 키키 2안의 2(b) 안